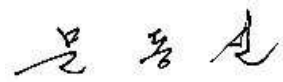


군산시청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17일

군산시 훈령 제300호

군산시청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과 사업소 및 부속건물 그리고 읍면동 청사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과 사업소 및 부속건물 그리고 읍면동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원경찰의 배치) 시 본청 청사 출입구에 청원경찰 1인 이상을 고정 배치한다. 다만, 경계의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청사출입의 제한) ① 시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1인시위 포함)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음주 후에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5.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경우
6.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금지행위) 청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로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물품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 조치를 받은 자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7조(감독) 출입자 통제의 감독은 주간 및 비상근무시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및 감독) 시 산하 사업소 및 읍면동은 본 규정을 준용하되, 출입자 통제의 감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3-1149호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 (법률 제11062호)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8항, 동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제11항, 동법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 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칙 (안 제 1 장)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정의(안 제2조)

○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안 제 2 장)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3조~제4조)

나. 위원회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5조~제6조)

- 다. 위원회 간사 및 회의 (안 제7조~제8조)
-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 및 기피 (안 제9조~제10조)
-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1조)

○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안 제 3 장)

-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12조~제13조)
- 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4조)
- 다. 위원회 간사 및 회의 (안 제15조~제16조)
-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17조)
-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8조)
- 바.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9조)

○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 (안 제 4 장)

- 가. 추진단 조직 및 구성과 기능(안 제20조~제21조)
- 나. 추진단 사무분장 (안 제22조)
-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안 제23조)
- 라. 수당 등 운영세칙 (안 제24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 [참조 : 토지정보과,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전화 : 454-3962, FAX : 454-3948, E-mail : k153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3 . . . (제 회)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출 연월일	2013. 05 .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 9. 16 법률 제11062호로 제정되어 2012.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8항 및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제11항,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 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 1 장 총 칙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정의 (안 제2조)

제 2 장 지적재조사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다. 위원회 기능 (안 제5조)

라.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6조)

마. 위원회 간사 (안 제7조)

바. 위원회 회의 (안 제8조)

사. 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9조)

아.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안 제10조)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1조)

제 3 장 경계결정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안 제12조)

-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13조)
- 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4조)
- 라. 위원회 간사 (안 제15조)
- 마. 위원회 회의 (안 제16조)
- 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17조)
- 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8조)
- 아.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9조)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

- 가. 추진단 조직 및 구성 (안 제20조)
- 나. 추진단 기능 (안 제21조)
- 다. 추진단 사무분장 (안 제22조)
-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안 제23조)
- 마. 수당 등 (안 제24조)
- 바. 운영세칙 (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2)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표준안)
- 도 토지주택과-11666(2012. 06. 11)호와 관련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총무과,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3. . . ~ 2013.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구성)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위원은 본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결에 한하여 참여한다.

1. 시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과 우선순위 조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4.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5.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의 분쟁 및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전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

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

제20조(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가

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그 밖에 추진단에 근무하는 인원,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운영 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8.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입체지적(지상·지하)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국·시비 예산관리
18. 사업 추진관련 국·시비 예산관리
19. 사업 관련 보고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20.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지적계	
연 락 처	(063) 454 - 3962

군산시 공고 제 2013 - 1171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 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조 례 명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우리 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융자 및 지방채 상환 재원 활용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관리

3.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안 제5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 그 밖의 수입금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안 제6조)
 -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
 -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지방채 상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안 제7조)
 - 각 기금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용자(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
 - 기금의 용자기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용자약정, 용자금의 이자 결정, 용자사업의 원리금 상환
-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5조, 16조, 17조)
 - 통합관리기금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대행, 금융자금 시금고 예치·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4. 조례안 : 불 입

5. 예고기간 : 2013. 6. 17. ~ 6. 27(10일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나. 전 화 : 063) 454-2315, 팩스 : 063) 452-8157
 - 다. 이메일 : dudrlf@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이메일 제출

군산시 조례 제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산시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예수"란 다른 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5. "예탁"이란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채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증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금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2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3장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5. 융자금의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관리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계장

-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④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리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⑥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⑦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

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⑧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시금고의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를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⑨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⑩ 군산시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⑪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⑫ 군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예치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⑬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예 탁 증 서

(제8조 관련)

금 액 : 금 _____ 원 (₩ _____)

- 예탁기간 : ~ ()

- 이 율 : %

- 상환조건 :

상기 금액을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인)

군 산 시 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용자 약정서

(제12조제2항 관련)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자조건) “을”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번호 :
2.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3. 용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4. 용 자 액 : 금 원 (₩)
5. 이 자 율 : 연 %
6. 상환기간 :

제2조(상환방법)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용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균등분할 상환 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용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용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

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의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용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인

을 :

인

【 별지 제4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용자금 영수증

(제12조제3항 관련)

금 _____ 원 (₩ _____)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 통합관리기금 용자약정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군산시수입금출납원 (인)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용자금 관리카드

(제12조제4항 관련)

☐ 용자번호:☐ 용자부서:☐ 용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용 자 일	용 자 액			용 자 조 건		비고
		계	원 금	이 자	이율	상 환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회 수 계 획				회 수 실 적				회 수 잔 액		
연월일	계	원금	이자	연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작성자	(인) 확인자			(인)		

군산시 고시 제2013 - 73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6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1,076	중로 2-107	대로 3-18	일반 도로		'91.12.05	
변경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1,076	중로 2-107	대로 3-18	일반 도로		'91.12.05	가각변경
기정	중로	2	107	15	집산 도로	500	중로 1-56	남방과제	일반 도로		'01.12.28	
변경	중로	2	107	15	집산 도로	500	중로 1-56	남방과제	일반 도로		'01.12.28	선형변경

2.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 음생략

3.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끝.

군산시 고시 제2013-7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수산2지구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28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5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1	52086	X 268940.84	35°55'13"	X 369247.23	중부	4.340	옥구읍 선제 리 510-57	2013.03.1 2	철재
		Y 171550.63	126°41'08"	Y 171623.03					
2	52087	X 269106.57	35°55'18"	X 369412.96	중부	6.810	옥구읍 선제 리 521	2013.03.1 2	철재
		Y 171695.85	126°41'14"	Y 171768.26					
3	52088	X 268951.94	35°55'13"	X 369258.33	중부	6.100	옥구읍 오곡 리 670	2013.03.1 2	철재
		Y 171837.70	126°41'20"	Y 171910.10					
4	52089	X 269064.11	35°55'17"	X 369370.50	중부	4.850	옥구읍 오곡 리 672	2013.03.1 2	철재
		Y 172017.04	126°41'26"	Y 172089.44					
5	52090	X 269191.55	35°55'11"	X 369497.94	중부	4.570	옥구읍 오곡 리 670	2013.03.1 2	철재
		Y 172220.87	126°41'32"	Y 172293.27					
6	52091	X 269272.88	35°55'21"	X 369579.27	중부	4.570	옥구읍 오곡 리 72-1	2013.03.1 2	철재
		Y 172400.70	126°41'34"	Y 172473.10					
7	52092	X 269093.64	35°55'18"	X 369400.04	중부	4.730	옥구읍 옥곡 리 72-1	2013.03.1 2	철재
		Y 172485.88	126°41'45"	Y 172558.28					
8	52093	X 269154.06	35°55'20"	X 369460.46	중부	4.910	옥구읍 오곡 리 660	2013.03.1 2	철재
		Y 172645.76	126°41'52"	Y 172718.15					

9	52094	X	268969.35	35°55'14"	X	369275.76	중부	4.260	옥구읍 오곡리 660	2013.03.12	철재
		Y	172797.11	126°41'58"	Y	172869.51					
10	52095	X	268885.92	35°55'11"	X	369192.33	중부	4.700	옥구읍 오곡리 663	2013.03.12	철재
		Y	172992.34	126°41'06"	Y	173064.73					
11	52096	X	268676.31	35°55'05"	X	368982.72	중부	4.700	옥구읍 이곡리 669-2	2013.03.12	철재
		Y	173148.07	126°42'12"	Y	173220.47					
12	52097	X	268611.24	35°55'03"	X	368917.65	중부	4.770	옥구읍 이곡리 749	2013.03.12	철재
		Y	173301.05	126°42'18"	Y	173373.45					
13	52098	X	268518.42	35°55'00"	X	368824.84	중부	4.330	옥구읍 이곡리 644-2	2013.03.12	철재
		Y	173491.65	126°42'59"	Y	173564.05					
14	52099	X	268417.86	35°54'56"	X	368724.28	중부	5.580	옥구읍 이곡리 649-5	2013.03.12	철재
		Y	173698.38	126°42'34"	Y	173770.78					
15	52100	X	268254.06	35°54'54"	X	368560.47	중부	3.870	옥구읍 수산리 41-19	2013.03.12	철재
		Y	173625.43	126°42'31"	Y	173697.83					
16	52101	X	268437.54	35°54'57"	X	368743.94	중부	4.270	옥구읍 오곡리 31	2013.03.12	철재
		Y	172917.03	126°42'03"	Y	172989.43					
17	52102	X	268613.27	35°55'03"	X	368919.68	중부	4.240	옥구읍 오곡리 655-10	2013.03.12	철재
		Y	172805.00	126°41'58"	Y	172877.40					
18	52103	X	268664.84	35°55'04"	X	368971.24	중부	4.640	옥구읍 오곡리 686	2013.03.12	철재
		Y	172682.84	126°41'53"	Y	172755.24					
19	52104	X	268863.29	35°55'11"	X	369169.69	중부	4.090	옥구읍 오곡리 662-7	2013.03.12	철재
		Y	172606.31	126°41'50"	Y	172678.71					
20	52105	X	268900.19	35°54'59"	X	369206.59	중부	5.090	옥구읍 오곡리 661-7	2013.03.12	철재
		Y	172467.57	126°42'36"	Y	172539.98					
21	52106	X	268971.11	35°55'14"	X	369277.51	중부	4.450	옥구읍 오곡리 659-3	2013.03.12	철재
		Y	172307.41	126°41'38"	Y	172379.82					
22	52107	X	268864.75	35°55'11"	X	369171.15	중부	4.930	옥구읍 오곡리 657-2	2013.03.12	철재
		Y	172246.87	126°41'36"	Y	172319.27					
23	52108	X	268875.74	35°55'11"	X	369182.14	중부	4.470	옥구읍 오곡리 660	2013.03.12	철재
		Y	172090.29	126°41'30"	Y	172162.69					
24	52109	X	268624.06	35°55'03"	X	368930.46	중부	5.570	옥구읍 오곡리 654-2	2013.03.12	철재
		Y	172240.85	126°41'37"	Y	172313.29					

25	52110	X	268494.53	35°54'59"	X	368800.92	중부	6.300	옥구읍 오곡 리 147	2013.03.1 2	철재
		Y	172071.05	126°41'29"	Y	1721143.4 6					
26	52111	X	268350.82	35°54'54"	X	368657.22	중부	5.660	옥구읍 오곡 리 674	2013.03.1 2	철재
		Y	171994.33	126°41'26"	Y	172066.74					
27	52112	X	268451.33	35°54'57"	X	368757.72	중부	6.570	옥구읍 오곡 리 651-12	2013.03.1 2	철재
		Y	171923.14	126°41'23"	Y	171995.55					
28	52113	X	268659.86	35°55'04"	X	368966.25	중부	5.260	옥구읍 오곡 리 674	2013.03.1 2	철재
		Y	171955.72	126°41'24"	Y	172028.12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693)

군산시 고시 제2013-75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해망동 해상도시 신규등록과 회현 금광 승수로 잔여부지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19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7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1	52114	X	276262.77	35°59'11"	X 376568..98	중부	5.05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1446.46	126°41'03"	Y 171518.72						
2	52115	X	276264.22	35°59'11"	X 376570.42	중부	5.07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1211.37	126°40'54"	Y 171283.63						
3	52116	X	276266.35	35°59'11"	X 376572.52	중부	5.13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985.27	126°40'45"	Y 171057.53						
4	52117	X	276268.50	35°59'11"	X 376574.66	중부	4.98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703.43	126°40'33"	Y 170775.69						
5	52118	X	276272.08	35°59'11"	X 376578.22	중부	4.92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232.18	126°40'18"	Y 170395.43						
6	52119	X	276273.99	35°59'11"	X 376580.12	중부	5.12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076.72	126°40'08"	Y 170148.99						
7	52120	X	276271.21	35°59'11"	X 376577.33	중부	3.42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69878.87	126°40'00"	Y 169951.13						
8	52121	X	276276.57	35°59'11"	X 376582.67	중부	5.030	해망동 해 상도시내	2013.04.15	철재	

		Y	169536.19	126°39'47"	Y	169608.46			도시내			
9	52122	X	276286.46	35°59'11"	X	376592.53	중부	5.44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69070	126°39'28"	Y	169142.93						
10	52123	X	276696.50	35°59'24"	X	377002.57	중부	5.16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69045.79	126°39'27"	Y	169118.04						
11	52124	X	276726.94	35°59'25"	X	3770033.03	중부	5.15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69413.16	126°39'42"	Y	169485.41						
12	52125	X	276722.79	35°59'25"	X	377028.91	중부	5.22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055.71	126°40'07"	Y	170127.95						
13	52126	X	276785.29	35°59'27"	X	377091.45	중부	5.22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0629.14	126°40'30"	Y	170701.37						
14	52127	X	276831.24	35°59'29"	X	377137.42	중부	5.33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1047.79	126°40'47"	Y	171120.02						
15	52128	X	265604.24	35°53'25"	X	365910.78	중부	3.980	해망동 해상 도시내	2013.04.15	철재	
		Y	178704.10	126°45'54"	Y	178776.66						
16	52129	X	265709.97	35°53'29"	X	366016.52	중부	3.190	회현면 금광 리 1249	2013.04.15	철재	
		Y	178917.56	126°46'02"	Y	178990.10						
17	52130	X	265590.06	35°53'25"	X	365896.62	중부	3.280	회현면 금광 리 1249	2013.04.15	철재	
		Y	179081.16	126°46'09"	Y	179153.71						
18	52131	X	265714.95	35°53'29"	X	366021.50	중부	5.390	회현면 금광 리 1249	2013.04.15	철재	
		Y	179261.38	126°46'16"	Y	179333.93						
19	52132	X	266001.25	35°53'38"	X	366307.80	중부	5.720	회현면 금광 리 1249	2013.04.15	철재	
		Y	179200.21	126°46'14"	Y	179272.76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693)

(군산시 고시 제2013 - 76호)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제한 기간 해제 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토록하는 군산시 고시 제2012 - 58호(2012. 5. 2)로 고시한 거주기간 제한사항을 해제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군 산 시 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3-77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광교지구경지정리사업 따른 지적도근점(89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10일

군 산 시 장

번 호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1	52154	X 270931.58	35-56-18.75170	X 371238.25	중부	4.610	대야면 복교 리 551-2	2013.04.1 6	철재
		Y 184871.52	126-49-59.31710	Y 184943.94					
2	52155	X 270843.89	35-56-15.91547	X 371150.56	중부	3.960	대야면 복교 리 551-14	2013.04.1 6	철재
		Y 185030.76	126-50-05.67612	Y 185103.19					
3	52156	X 270774.07	35-56-13.63989	X 371080.74	중부	4.440	대야면 복교 리 553-1	2013.04.1 6	철재
		Y 184848.67	126-49-58.41637	Y 184921.10					
4	52157	X 270639.72	35-56-09.29332	X 370946.40	중부	4.360	대야면 복교 리 554-9	2013.04.1 6	철재
		Y 185065.45	126-50-07.07392	Y 185137.88					
5	52158	X 270516.42	35-56-05.28319	X 370823.09	중부	4.480	대야면 복교 리 247-11	2013.04.1 6	철재
		Y 184892.98	126-50-00.20187	Y 184965.41					
6	52159	X 270424.79	35-56-02.30517	X 370731.46	중부	4.480	대야면 복교 리 247-13	2013.04.1 6	철재
		Y 184802.36	126-49-56.59293	Y 184874.79					
7	52160	X 270404.5	35-56-01.66303	X 370711.18	중부	5.770	대야면 복교 리 198-67	2013.04.1 6	철재
		Y 185087.91	126-50-07.98598	Y 185160.34					
8	52161	X 270226.46	35-55-55.88385	X 370533.14	중부	4.300	대야면 복교 리 1325-82	2013.04.1 6	철재
		Y 185041.08	126-50-06.12985	Y 185113.51					

9	52162	X	270189.95	35-55-54.69467	X	370496.63	중부	4.460	대야면 복교 리 1346	2013.04.1 6	철재
		Y	184957.05	126-50-02.78030	Y	185029.49					
10	52163	X	270237.91	35-55-56.24118	X	370544.58	중부	4.230	대야면 복교 리 248-1	2013.04.1 6	철재
		Y	184786.96	126-49-55.99181	Y	184859.40					
11	52164	X	270029.61	35-55-49.48330	X	370336.29	중부	4.080	대야면 복교 리 401-3	2013.04.1 6	철재
		Y	184790.13	126-49-56.13245	Y	184862.57					
12	52165	X	270060.45	35-55-50.49495	X	370367.13	중부	4.180	대야면 복교 리1332	2013.04.1 6	철재
		Y	184990.6	126-50-04.12765	Y	185063.04					
13	52166	X	270058.94	35-55-50.45627	X	370365.62	중부	4.360	대야면 복교 리 198-80	2013.04.1 6	철재
		Y	185176.28	126-50-11.53515	Y	185248.73					
14	52167	X	269918.46	35-55-45.90111	X	370225.15	중부	4.470	대야면 복교 리 402-19	2013.04.1 6	철재
		Y	185219.97	126-50-13.28734	Y	185292.42					
15	52168	X	269868.57	35-55-44.27626	X	370175.25	중부	4.410	대야면 복교 리 1336	2013.04.1 6	철재
		Y	185111.12	126-50-08.94852	Y	185183.57					
16	52169	X	269910.37	35-55-45.61977	X	370217.04	중부	4.210	대야면 복교 리 402-19	2013.04.1 6	철재
		Y	184884.95	126-49-59.92343	Y	184957.40					
17	52170	X	269770.52	35-55-41.07853	X	370077.20	중부	4.710	대야면 복교 리 402-4	2013.04.1 6	철재
		Y	184813.39	126-49-57.07858	Y	184885.84					
18	52171	X	269699.62	35-55-38.78606	X	370006.29	중부	4.230	대야면 복교 리 1325-65	2013.04.1 6	철재
		Y	184957.16	126-50-02.81849	Y	185029.61					
19	52172	X	269650.52	35-55-37.20449	X	369957.20	중부	4.430	대야면 복교 리 1337	2013.04.1 6	철재
		Y	185161.13	126-50-10.95840	Y	185233.59					
20	52173	X	269693	35-55-38.58965	X	369999.68	중부	4.470	대야면 복교 리 198-94	2013.04.1 6	철재
		Y	185289.32	126-50-16.06895	Y	185361.77					
21	52174	X	269500.97	35-55-32.36283	X	369807.66	중부	4.460	대야면 복교 리 382-15	2013.04.1 6	철재
		Y	185349.52	126-50-18.48329	Y	185421.98					
22	52175	X	269424.99	35-55-29.88906	X	369731.68	중부	4.480	대야면 복교 리 1338	2013.04.1 6	철재
		Y	185191.97	126-50-12.20373	Y	185264.43					
23	52176	X	269479.66	35-55-31.65404	X	369786.35	중부	4.210	대야면 복교 리 407-16	2013.04.1 6	철재
		Y	185032.5	126-50-05.83876	Y	185104.96					
24	52177	X	269557.29	35-55-34.16256	X	369863.97	중부	4.070	대야면 복교 리 404-6	2013.04.1 6	철재
		Y	184853.92	126-49-58.71001	Y	184926.38					
25	52178	X	269324.15	35-55-26.60198	X	369630.83	중부	4.200	대야면 복교 리 408-7	2013.04.1 6	철재
		Y	184914.87	126-50-01.15745	Y	184987.33					

26	52179	X 269278.52	35-55-25.13182	X 369585.20	중부	4.220	대야면 복교 리 408-14	2013.04.1 6	철재	
		Y 185101.35	126-50-08.59871	Y 185173.81						
27	52180	X 269217	35-55-23.14533	X 369523.69	중부	4.470	대야면 복교 리 393-9	2013.04.1 6	철재	
		Y 185273.6	126-50-15.47373	Y 185346.06						
28	52181	X 269319.12	35-55-26.46648	X 369625.81	중부	5.710	대야면 복교 리 382-17	2013.04.1 6	철재	
		Y 185420.47	126-50-21.32553	Y 185492.93						
29	52182	X 269127.08	35-55-20.23464	X 369433.77	중부	4.260	대야면 복교 리 378-2	2013.04.1 6	철재	
		Y 185397.72	126-50-20.43092	Y 185470.19						
30	52183	X 269074.54	35-55-18.51793	X 369381.23	중부	4.300	대야면 복교 리 375-2	2013.04.1 6	철재	
		Y 185176.71	126-50-11.61853	Y 185249.17						
31	52184	X 269076.41	35-55-18.56962	X 369383.10	중부	4.810	대야면 복교 리 374-4	2013.04.1 6	철재	
		Y 185012.74	126-50-05.07813	Y 185085.21						
32	52185	X 269006.44	35-55-16.28944	X 369313.12	중부	5.160	대야면 복교 리 905-2	2013.04.1 6	철재	
		Y 184834.06	126-49-57.95573	Y 184906.52						
33	52186	X 268769.12	35-55-08.59603	X 369075.80	중부	4.830	대야면 복교 리 533-13	2013.04.1 6	철재	
		Y 184947.19	126-50-02.48459	Y 185019.66						
34	52187	X 268778.27	35-55-08.90022	X 369084.96	중부	4.790	대야면 복교 리 1441-1	2013.04.1 6	철재	
		Y 185076.57	126-50-07.64453	Y 185149.04						
35	52188	X 268520.46	35-55-00.53502	X 368827.15	중부	4.740	대야면 복교 리 535-11	2013.04.1 6	철재	
		Y 185067.47	126-50-07.29909	Y 185139.95						
36	52189	X 268532.35	35-55-00.92831	X 368839.04	중부	4.720	대야면 복교 리 416-4	2013.04.1 6	철재	
		Y 185204.01	126-50-12.74418	Y 185276.49						
37	52190	X 268809.92	35-55-09.93033	X 369116.61	중부	4.900	대야면 복교 리 411-6	2013.04.1 6	철재	
		Y 185135.31	126-50-09.98527	Y 185207.78						
38	52191	X 268664.39	35-55-05.21205	X 368971.09	중부	4.260	대야면 복교 리 414-4	2013.04.1 6	철재	
		Y 185195.66	126-50-12.40233	Y 185268.14						
39	52192	X 268955.74	35-55-14.67955	X 369262.44	중부	5.500	대야면 복교 리 373-42	2013.04.1 6	철재	
		Y 185469.44	126-50-23.30281	Y 185541.90						
40	52193	X 268673.42	35-55-05.51768	X 368980.12	중부	7.050	대야면 복교 리 1325-17	2013.04.1 6	철재	
		Y 185429.4	126-50-21.72433	Y 185501.87						
41	52194	X 271115.56	35-56-24.73383	X 371422.23	중부	8.680	대야면 복교 리 1325-134	2013.04.1 6	철재	
		Y 185106.25	126-50-08.66939	Y 185178.67						
42	52195	X 271029.92	35-56-21.97529	X 371336.60	중부	6.130	대야면 복교 리	2013.04.1 6	철재	
		Y 185473.86	126-50-23.34180	Y 185546.28						

								1325-84			
43	52196	X	270949.06	35-56-19.34168	X	371255.74	중부	4.48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283.53	126-50-15.75364	Y	185355.96					
44	52197	X	270886.92	35-56-17.33409	X	371193.60	중부	4.680	대야면 복교 리 1327	2013.04.1 6	철재
		Y	185444.97	126-50-22.19854	Y	185517.39					
45	52198	X	270874.49	35-56-16.93915	X	371181.17	중부	4.45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598.53	126-50-28.32565	Y	185670.95					
46	52199	X	270839.97	35-56-15.82688	X	371146.65	중부	4.44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744.06	126-50-34.13389	Y	185816.48					
47	52200	X	270807.36	35-56-14.77607	X	371114.05	중부	4.45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881.73	126-50-39.62868	Y	185954.16					
48	52201	X	270776.26	35-56-13.77409	X	371082.95	중부	4.43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6013.13	126-50-44.87274	Y	186085.55					
49	52202	X	270584.94	35-56-07.56520	X	370891.63	중부	4.43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985.28	126-50-43.77391	Y	186057.71					
50	52203	X	270637.7	35-56-09.26826	X	370944.39	중부	4.48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815.48	126-50-36.99665	Y	185887.91					
51	52204	X	270622.16	35-56-08.75181	X	370928.84	중부	4.13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588.19	126-50-27.92978	Y	185660.62					
52	52205	X	270718.99	35-56-11.89071	X	371025.68	중부	4.410	대야면 복교 리 86-52	2013.04.1 6	철재
		Y	185533.12	126-50-25.72635	Y	185605.54					
53	52206	X	270780.84	35-56-13.89101	X	371087.53	중부	4.490	대야면 복교 리 1325-136	2013.04.1 6	철재
		Y	185413.8	126-50-20.96201	Y	185486.23					
54	52207	X	270707.1	35-56-11.49547	X	371013.78	중부	4.360	대야면 복교 리 86-21	2013.04.1 6	철재
		Y	185360.76	126-50-18.85073	Y	185433.18					
55	52208	X	270730.4	35-56-12.24612	X	371037.08	중부	4.380	대야면 복교 리 86-24	2013.04.1 6	철재
		Y	185260.75	126-50-14.85937	Y	185333.18					
56	52209	X	270835.53	35-56-15.64928	X	371142.20	중부	8.560	대야면 복교 리 86-65	2013.04.1 6	철재
		Y	185122.79	126-50-09.34838	Y	185195.22					
57	52210	X	270565.77	35-56-06.89780	X	370872.45	중부	6.000	대야면 복교 리 1325-134	2013.04.1 6	철재
		Y	185132.05	126-50-09.73610	Y	185204.48					
58	52211	X	270458.99	35-56-03.43836	X	370765.67	중부	4.830	대야면 복교 리 189-37	2013.04.1 6	철재
		Y	185223.61	126-50-13.39623	Y	185296.05					
59	52212	X	270463.23	35-56-03.58629	X	370769.91	중부	5.060	대야면 복교	2013.04.1	철재

		Y	185416.25	126-50-21.08109	Y	185488.69			리 184-4	6	
60	52213	X	270423.29	35-56-02.30063	X	370729.98	중부	4.360	대야면 복교 리 52-27	2013.04.1 6	철재
		Y	185606.01	126-50-28.65374	Y	185678.44					
61	52214	X	270385.67	35-56-01.08957	X	370692.36	중부	4.370	대야면 복교 리 41-19	2013.04.1 6	철재
		Y	185782.13	126-50-35.68218	Y	185854.56					
62	52215	X	270352.69	35-56-00.02746	X	370659.38	중부	4.370	대야면 복교 리 44-31	2013.04.1 6	철재
		Y	185936.87	126-50-41.85763	Y	186009.30					
63	52216	X	270136.42	35-55-53.00858	X	370443.11	중부	4.430	대야면 복교 리 11-29	2013.04.1 6	철재
		Y	185895.4	126-50-40.21715	Y	185967.84					
64	52217	X	270175.54	35-55-54.26807	X	370482.23	중부	4.440	대야면 복교 리 20-49	2013.04.1 6	철재
		Y	185708.95	126-50-32.77665	Y	185781.39					
65	52218	X	270264.62	35-55-57.14490	X	370571.31	중부	4.290	대야면 복교 리 27-21	2013.04.1 6	철재
		Y	185456.18	126-50-22.68719	Y	185528.62					
66	52219	X	270016.56	35-55-49.11092	X	370323.26	중부	4.140	대야면 복교 리 18-24	2013.04.1 6	철재
		Y	185726.02	126-50-33.34850	Y	185795.47					
67	52220	X	269908.79	35-55-45.62069	X	370215.49	중부	4.120	대야면 광교 리 635-38	2013.04.1 6	철재
		Y	185844.14	126-50-38.18679	Y	185916.58					
68	52221	X	269807.64	35-55-42.34467	X	370114.33	중부	4.140	대야면 광교 리 637-42	2013.04.1 6	철재
		Y	185958.17	126-50-42.74214	Y	186030.61					
69	52222	X	270278.39	35-55-57.57620	X	370585.07	중부	7.390	대야면 복교 리 194-15	2013.04.1 6	철재
		Y	185175.4	126-50-11.48489	Y	185247.84					
70	52223	X	270110.24	35-55-52.13094	X	370416.93	중부	4.300	대야면 복교 리 211-17	2013.04.1 6	철재
		Y	185363.05	126-50-18.98223	Y	185435.49					
71	52224	X	270243.4	35-55-56.45347	X	370550.09	중부	5.150	대야면 복교 리 230-21	2013.04.1 6	철재
		Y	185400.89	126-50-20.48270	Y	185473.33					
72	52225	X	270079.3	35-55-51.13877	X	370385.99	중부	4.240	대야면 복교 리 19-24	2013.04.1 6	철재
		Y	185583.01	126-50-27.75875	Y	185655.45					
73	52226	X	269951.08	35-55-46.97790	X	370257.77	중부	4.180	대야면 복교 리 274-1	2013.04.1 6	철재
		Y	185561.78	126-50-26.92044	Y	185634.22					
74	52227	X	269894.58	35-55-45.13692	X	370201.26	중부	4.180	대야면 복교 리 242-54	2013.04.1 6	철재
		Y	185420.35	126-50-21.28225	Y	185492.79					
75	52228	X	270062.8	35-55-50.58549	X	370369.48	중부	4.290	대야면 복교 리 211-27	2013.04.1 6	철재
		Y	185249.6	126-50-14.45936	Y	185322.04					
76	52229	X	269742.94	35-55-40.21358	X	370049.63	중부	3.790	대야면 복교 리 264-20	2013.04.1	철재

		Y 185352.72	126-50-18.59474	Y 185425.17				6	
77	52230	X 269719.68	35-55-39.47113	X 370026.37	중부	4.220	대야면 복교리 284-4	2013.04.16	철재
		Y 185579.9	126-50-27.65855	Y 185652.35					
78	52231	X 269767.88	35-55-41.04368	X 370074.57	중부	4.120	대야면 광교리 635-5	2013.04.16	철재
		Y 185746.59	126-50-34.30477	Y 185819.04					
79	52232	X 269906.77	35-55-45.55133	X 370213.47	중부	4.230	대야면 복교리 276-28	2013.04.16	철재
		Y 185771.88	126-50-35.30476	Y 185844.33					
80	52233	X 269535.81	35-55-33.49675	X 369842.51	중부	4.580	대야면 복교리 284-26	2013.04.16	철재
		Y 185413.88	126-50-21.04786	Y 185486.33					
81	52234	X 269628.64	35-55-36.51870	X 369935.34	중부	3.940	대야면 광교리 636-5	2013.04.16	철재
		Y 185603.88	126-50-28.62088	Y 185676.33					
82	52235	X 269625.11	35-55-36.41520	X 369931.81	중부	4.250	대야면 광교리 635-9	2013.04.16	철재
		Y 185813.5	126-50-36.98301	Y 185885.95					
83	52236	X 269390.38	35-55-28.79671	X 369697.07	중부	4.260	대야면 광교리 635-18	2013.04.16	철재
		Y 185763.26	126-50-34.99407	Y 185835.71					
84	52237	X 269471.47	35-55-31.41771	X 369778.17	중부	3.940	대야면 광교리 637-8	2013.04.16	철재
		Y 185570.28	126-50-27.29119	Y 185642.74					
85	52238	X 269351.03	35-55-27.50515	X 369657.72	중부	4.210	대야면 광교리 637-45	2013.04.16	철재
		Y 185481.91	126-50-23.77391	Y 185554.36					
86	52239	X 269182.91	35-55-22.05313	X 369489.61	중부	6.780	대야면 광교리 637-49	2013.04.16	철재
		Y 185528.87	126-50-25.65819	Y 185601.33					
87	52240	X 269204.31	35-55-22.75778	X 369511.01	중부	4.280	대야면 광교리 635-25	2013.04.16	철재
		Y 185723.37	126-50-33.41510	Y 185795.83					
88	52241	X 269070.13	35-55-18.40281	X 369376.83	중부	4.270	대야면 광교리 635-28	2013.04.16	철재
		Y 185694.67	126-50-32.27901	Y 185767.13					
89	52242	X 269031.89	35-55-17.17309	X 369338.60	중부	4.670	대야면 광교리 1335	2013.04.16	철재
		Y 185899.47	126-50-40.45054	Y 185971.93					
			이하여백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693)

군산시 고시 제2013 - 78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17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6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3-1108호

도시계획시설(변전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변전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6월 7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30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나. 명 칭 : 345kv 새만금 변전소 건설사업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세부내용
		면적(m ²)	면적(m ²)	
새만금 변전소	전기공급 설비	19,836	19,836	1. 건축면적 : 3,857m ² 2. 연 면 적 : 9,275m ² 3. 층 수 : 지하1층 / 지상3층 4.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 지지물수 : 철탑 1기(2회선:1기) 6. 변전소전압 : 345kv 7. 설비규모 : 주변압기 - (345/161/23kv 500MVA)×2Bank (최종규모 4Bank) 8. 변전소 형태 : 옥내GIS (지하1층, 지상3층)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0. 5. 14. ~ 2013. 5.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3-1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6월 7일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3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2) 명 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도 로	소로2-979	L=30m, B=8m	L=30m, B=8m	
녹 지	완충녹지 34	240m ²	240m ²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비응도동 30-1
 -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홍보에너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승인일 ~ 2013.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비응도동	30-1	공장	11,994.7	240	홍보에너지	군산시 비응도동30-1			
2	"	32	공원	7,615.3	240	군산시				

군산시 공고 제2013-1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6월 7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사업
 - 2) 명 칭 : 공단대로 확장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 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 원(m)	연장(m)	
도로	대로1-1	35	5,500	23~30m⇒35m	700.3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2-1)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1	군산시 수송동	50-7	답	394	66	강복순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 동				
2	"	49-28	도	321	30	군산시					
3	"	50-23	도	124	124	군산시					
4	"	49-42	도	157	157	군산시					
5	"	761-2	구	3,168	82	국(농수산부)					
6	"	49-17	도	7,461	3,691	국(건설부)					
7	"	891	도	77,560	7,164	군산시					
8	"	49-38	답	157	157	군산시					
9	"	49-26	답	309	309	군산시					
10	"	49-44	답	156	156	군산시					
11	"	49-24	답	158	158	군산시					
12	"	49-22	답	305	305	군산시					
13	"	49-20	답	305	305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14	"	49-18	답	306	306	공치춘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15	"	771-2	도	23	23	국(농수산부)					
16	"	771-1	도	43	43	국(농수산부)					
17	"	21-28	답	292	292	강기수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 동				
18	"	21-30	답	290	290	군산시					
19	"	21-32	답	293	293	김정모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20	"	21-35	답	294	294	성은주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1	"	21-33	도	25	25	국(재무부)					
22	"	21-37	답	290	290	정수희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				
23	"	21-39	답	292	292	김재신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24	"	21-27	도	6,170	6,170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2-2)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25	군산시 수송동	21-41	답	276	276	군산시					
26	"	21-43	답	267	267	서우석	군산시 동흥남동				
27	"	21-52	도	7	7	국(건설부)					
28	"	21-58	답	70	70	군산시					
29	"	21-45	답	196	196	군산시					
30	"	21-49	답	344	344	군산시					
31	"	21-18	철	17	14	국(건설교통부)					
32	"	770	철	3,094	313	국(건설교통부)					
33	"	21-21	철	1,124	74	국(건설교통부)					
34	"	21-25	도	245	175	국(건설교통부)					
35	"	21-47	수	26	26	국(건설부)					
36	"	21-46	도	141	141	국(건설부)					
37	"	761-7	구	16,968	296	국(농수산부)					
38	군산시 미장동	472	천	14,443	159	국(농수산부)					
39	"	57-47	구	6,229	1,3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0	"	58-55	도	13	13	국(건설부)					
41	"	58-69	도	3	3	양철용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 동				
42	"	58-107	전	13	13	군산시					
43	"	58-82	전	26	2	이형복	군산시 개사동				
44	"	57-89	구	288	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	"	57-120	구	10	1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6	"	58-101	전	4	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7	"	58-108	도	3,831	275	국(건설부)					
48	"	58-48	도	4,672	262	국(건설부)					

군산시 공고 제 2013-1139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6. 7.

군 산 시 장

1. 공고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관련 근거 : 건축법 제 69조 등
3. 대 상 : 건축법 등 위반 1건

연번	성 명	위 치	위반내용	시정기한
1	정일형	수송동 824-10	증축 1층 철골조 계단 12.45㎡ 조경훼손 21.512㎡	2013.07.3

4. 공고 기간 : 2013. 06. 07. ~ 2012. 12. 24. (15일간)

5. 기타 사항 :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정 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 80조)

나. 건축법 제1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법조치

(문의처 : 군산시 건축과 건축물관리계 ☎063-454-3752)

군산시 공고 제2013-1141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24-12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구분	도로 위치	소유자	도로면적	도로길이	도로너비
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24-12	강정식 김동만	18㎡	5m	3m

5. 공고기간 : 2013. 06. 07 ~ 2013. 06. 27 (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건축과 건축계(☎ 063-454-3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6. 07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3-114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6월 1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2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나. 명 칭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면적 (m ²)	실시계획인가 면 적(m ²)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23,312	23,312	
계		23,312	23,312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구암동 271-2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유)씨엔지알텍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2. 10. 26 ~ 2013. 5.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